

2009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안내

중소기업청, 올해 전년보다 35% 늘어난 4조 3천억 원 지원 확정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지난해 3조 2000억원 보다 35% 늘어난 4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2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자금의 70% 이상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정책자금의 기준 금리를 지난해의 5.91%에서 5.07%로 0.84%포인트 인하하고, 자금을 기능강화(창업초기기업·개발기술·사업전환) 분야와 시장보완(신성장기반·지방중소기업지원·긴급경영안정·소상공인) 분야로 구분해 각각 4.37%, 4.74%의 차등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각 자문에 대한 설명자료 및 신청방법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편집자 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조 3000억원 규모의 '2009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공고하고 1월 2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등을 통해 정책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사업별 자금지원 규모는 신성장기반(지식서비스)자금이 1조 19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창업초기기업 육성자금(1조원), 긴급경영안정자금(7000억원), 소상공인자금(5000억원),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30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1580억원), 사업전환자금(147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운용 계획에 따르면 정책자금의 기준 금리를 지난해 5.91%에서 5.07%로 0.84%포인트 인하하고, 자금을 기능강화(창업초기기업·개발기술·사업전환) 분야와 시장보완(신성장기반·지방중소기업지원·긴급경영안정·소상공인) 분야로 구분해 각각 4.37%, 4.74%의 차등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이 중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해보다 금리 인하 폭이 최대

2% 이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기청은 또 경영악화로 중소기업들의 재무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기술성 및 사업성 등 비재무평가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의 경우 지난해 60%에서 올해에는 80%로, 자산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현행 80%에서 90%로 각각 확대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및 신용대출자금도 각각 올해 1조원에서 1조 4600억원, 53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특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전체의 80% 이상을 직접대출 위주로 지원키로 했다.

개별 자금별 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대상을 기존 5년 미만의 업력에서 7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저탄소녹색산업(태양광 등 9개 분야) 및 첨단기술제품(10개 분야 473개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운전자금 등의 지원한도를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해 지원키로 했다.

중기청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을 비제조업으로 확대해 지식

서비스, 유통·물류 등의 비중을 현재 12% 수준에서 20%로 늘려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기존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리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 자금 배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지원안내(공통사항)

* 용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용자제한업종(www.sbc.or.kr의 자금용자 참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세무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단,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www.sbc.or.kr의 자금용자 참조)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용자

* 단,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관광숙박업(55111),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55119), 렌트카 등 임대업(69), 기타서비스업 중 세탁물공급업(96913)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예외

★ 융자한도

- 중소기업창업 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5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기업은 60억원) 또는 매출액의 150%
- *잔액기준과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 및 신성장유망중소기업(www.sbc.or.kr)의 자금융자 참조, 협동화·협업 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지방 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중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www.sbc.or.kr)의 자금융자 참조 영위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사업전환자금 중 사업장 국내이전 사업전환기업의 시설자금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중 시설자금, 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업력 5년 미만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하는 변동금리 적용(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기획재정부(www.mosf.go.kr) 공지사항 '2009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업체의 신용등급(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시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담보부,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방식으로만 융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 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과 취급은행의 대출을 연계한 협조융자
- 중소기업진흥공간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 중 일부 자금은 주식·사채인수 방식으로 병행 지원(성장공유형 자금 지원)

★ 융자제한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은 예외)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은 예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외인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괴행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중인 자. 다만, 재해를 직접인원으로 휴업중인 업체는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B+등급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중소기업(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예외)
- 자산규모 50억원 이상업체 중 기금 대출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 업체 중 기금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신청 당해연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는 융자 대상으로 포함)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www.sbc.or.kr)의 자금융자 참조)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년 미만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신청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사업장 국내이전 사업전환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금액과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금액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로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신청년도가 다르거나 자금 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 융자 신청·접수

- 2009.1.2일 ~ 자금 소진시까지
-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폐업자

영업자 전업지원자금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융자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급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융자제의 대상 업종(www.sbc.co.kr)의 자금융자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
- *업력 1년 미만 기업 중 10인 이상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하여 금리인하 적용(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업체에 한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업체 중 희망 기업에 한하여 체증형금리 적용 ('09년 4월 예정)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합)

○대출한도: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
금은 7억원

○용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업체를 결
정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 육성

★ 신청대상

○제조업, 지식서비스업(www.sbc.co.kr의
자금용자 참조)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
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기술(HT) 등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
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 인증을 받은 기술

★ 용자범위

○시설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
되는 자금

○운전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 용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

○대출기간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
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
함)

○대출한도: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
은 7억원)

은 5억원)

○용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업체를 결
정한 후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금융
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 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

★ 사업목적

○지역별 전략산업·특화산업의 기술개발
과 사업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 신청대상

○수도권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
령 제2조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지역전
략산업 및 연구산업(www.sbc.or.kr의
자금용자 참조)», 지방중소기업청장·지
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지역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별도공고)으
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
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
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
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 인증을 받은 기술

★ 용자범위

○시설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
되는 자금

○운전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 용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

○대출기간

-시설자금: 9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
함)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
함)

○대출한도: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
은 7억원)

○용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업체를 결
정한 후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금융
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 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신성장기반자금

★ 사업목적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중소
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
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
장 동력 창출

★ 신청대상

○용자제의 대상 업종(www.sbc.or.kr의
자금용자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
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업력 7년 미만 업체는 창업초기기업육성
자금으로 용자. 다만, 창업 요건에 해당되
지 않는 업체는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용자

-혁신형기업·신성장유망중소기업·지식
서비스업(www.sbc.or.kr의 자금용자 참
조) 영위기업은 용자시 우대

○용자제의 대상 업종(www.sbc.or.kr의
자금용자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집단화유형은 5
개 이상)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
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원
부자재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의 추진주
체로서 신청 가능

★ 용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
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
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
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
합병)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09년 한시 적용)

-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함)

○운전자금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

정책자금정보

금의 40% 이내)

* 혁신형기업 · 신성장유망중소기업 · 지식 서비스업(www.sbc.or.kr의 자금용자 참조)을 영위하는 기업, 협동화 승인(협업화에 한함) 및 협업승인을 얻은 자는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용자 가능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협동화 및 협업 승인기업: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 협동화 승인기업: 추진주체 45억원(운전 5억원), 참가업체 40억원(운전 5억원)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업체 30억원(운전 20억원)
- * 협업 승인기업: 추진주체 45억원(운전 5억원), 참가업체 40억원(운전 5억원)
- 용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업체를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 사업목적

○ 지역별 전략산업 · 특화산업 영위기업의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신청대상

○ 용자제의 대상 업종(www.sbc.or.kr의 자금용자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지역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www.sbc.or.kr의 자금용자 참조)」영위기업, 지방중소기업청장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지역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혁신형기업 · 신성장유망 중소기업 · 지식 서비스업(www.sbc.or.kr의 자금용자 참

조)은 용자시 우대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09년 한시 적용)
- 운전자금
-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 * 혁신형기업 · 신성장유망중소기업 · 지식 서비스업(www.sbc.or.kr의 자금용자 참조) 영위기업은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용자 가능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9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7억원)
- 용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업체를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 사업목적

○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 경제 발전 도모

* 신청대상

○ 농공단지입주 사업성검토 적합 판정 중소기업

* 융자범위

- 시설자금: 농공단지 신규입주기업의 공장 건축, 증축, 공장인수 및 기계설치자금, 직원용 기숙사, 탁아소설치, 연구소 등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용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업체를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목적

○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신청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가. 긴급경영안정사업은 용자제의 대상 업종(www.sbc.or.kr의 자금용자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나.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용자제외대상업종(www.sbc.or.kr의 자금용자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관(약정기간 누계기준)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용자 제외

* 융자범위

가. 긴급경영안정사업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 천재지변 및 인위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



된 지역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 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경영애로기업**

-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자본 잠식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피해 기업
-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나. 수출금융지원사업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P/D)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 융자조건 및 방식**

가.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차감(기준금리)
- * 재해중소기업(변동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1.23%p차감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업체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 원부자재 구입용도 이외의 운전자금은 연간 3억원 이내
-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나.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수출품 선적후 수출한 어음 매입시 정산
-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최장 1년 이내)
- 수출실적기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로 5억원 한도
- * 수출실적 기준 이용업체는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20억원)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융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순수신용, 보증서부(한국수출보험공사) 직접대출

*** 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사업전환자금

*** 사업목적**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필요 자금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 도모

*** 신청대상**

-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www.sbc.or.kr의 자금용자 참조)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아래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적용기간	현 영위업종 (품목)	전환 진출업종 (품목)
09.2.28 까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사업전환 계획승인 및 지원제의 대상업종 (www.sbc.or.kr의 자금용자 참조)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융자제외대상 업종 (www.sbc.or.kr의 자금용자 참조)제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시행되는 09.3.1부터 현 영위업종(품목)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 예정

적용기간	현 영위업종 (품목)	전환 진출업종 (품목)
09.3.1 부터	모든 업종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융자제외대상 업종 (www.sbc.or.kr의 자금용자 참조)제외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www.sbc.or.kr)의 자금용자 참조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www.sbc.or.kr)의 자금용자 참조

*** 융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업체당 연간 4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융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사업목적**

○서비스산업 지원 등의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정책자금정보

* 융자시기

- 상반기: 2009. 1. 2일 ~ 자금소진시까지
- 하반기: 2009. 7. 1일 ~ 자금소진시까지, 2009. 10. 1일 ~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 융자지원 제외 대상: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지원 제외
- 우선 지원대상: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및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 * 교육·컨설팅 이수자 등 우선 지원대상은 반기별 계획된 자금 소진시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

* 융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차감(기준금리)
- 대출한도: 5천만원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취급은행(17개):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 융자절차

- 신청·접수: 소상공인지원센터
-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 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대출 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접수기관: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폐업 자영업자 전업지원

* 융자시기

- 2009. 1. 2일 ~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폐업자: 1년 이상 영업을 하다 폐업한 자 2년 이내(자금신청일 기준)로 재창업 예정자
- 사업전환 희망자: 1년 이상 영업을 계속 해온(자금신청일 기준) 자로서 폐업 후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자
- * 중기청장이 정한 재창업·사업전환 관련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자에 한함

* 융자범위

- 재창업 또는 사업전환시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임차보증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 영업활동을 위한 제반 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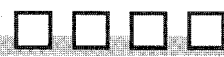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차감(기준금리)
- 대출한도: 5천만원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취급은행(17개):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 융자절차

- 신청 및 교육 컨설팅 이수 등: 소상공인지원센터
- 상담 및 자금 신청, 사업적성 진단, 교육·컨설팅 이수 후 '폐업 자영업자 교육·컨설팅 확인서'를 발급
- *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폐업 자영업자 교육·컨설팅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 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 대출: 대출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접수기관: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단일전화 1588-5302)



[문의 및 신청 · 접수기관 연락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전화	지역본(지)부	전화	지역본(지)부	전화
서울 (여의도)	02)769-6812~7	전남서부 (목포)	061)287-7755~6	경기북부 (고양)	031)920-6700
서울동남부 (서초)	02)2156-2212~6	전남동부 (순천)	061)724-1056	충북 (청주)	043)230-6811~3
대구 · 경북 (대구)	053)601-5300	대전 · 충남 (대전)	042)866-0123	전북 (전주)	063)210-9922~5
경북중서부 (구미)	054)476-9314~6	충남북부 (천안)	041)621-3681~8	경남 (창원)	055)212-1350
경북동부 (포항)	054)223-2041~3	인천	032)450-0521~7	강원 (춘천)	033)259-7621~3
부산	051)630-7400	경기 (수원)	031)259-7922/32/92	강원영동 (강릉)	033)655-8873~4
광주 · 전남 (광주)	062)600-3000	경기서부 (시흥)	031)496-1081~6	울산	052)703-1130~4
제주	064)751-2052~6				

■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	전화번호	지역	전화번호
서울	02)563-1400	강원(춘천)	033)251-1353
부산	051)816-6050~2	경남(창원)	055)212-1250
대구	053)554-5300	경북(구미)	054)474-7100
인천	032)260-1500~3	전남(순천)	061)729-0600
광주	062)950-0011	전북(전주)	063)230-3333
대전	042)864-1701~6	충남(아산)	041)541-9833
울산	052)289-2300	충북(청주)	043)236-2691
경기(수원)	031)259-7700	제주	064)758-5740



인터넷이용 안내

- 중소기업청 : www.smba.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 www.sbc.or.kr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www.icredit.or.kr
- 중소기업정책포털 : www.bizinfo.go.kr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 : www.sbdc.or.kr